

## 2018.5.19.사회복지직 논란이 되었던 7번 문제 조언-번역자 답변내용 포함

2018년 5월 19일에 있었던 16개 시.도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개론 7번 문제인 길버트와 테렐의 할당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해설을 통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문제의 출처로 확신할 수 있는 전공서의 출판사에 담당조교를 통해 질의를 하였고,  
번역자의 답변내용을 해당 출판사를 통해 이틀 전인 2월 7일 이메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닐 길버트와 폴 테렐(Neil Gilbert & Paul Terrell)의 유명한 저서인  
'**사회복지정책론 -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을 번역한 책에서 발췌하여 출제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데(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함),  
번역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틀린 내용을 그대로 출제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문제의 표 가운데 부분에 원칙의 결정기준들을 배치해놓는 방식으로 출제하면서, 지문 ㉔번 보상의 원칙 결정기준을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내용은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귀속적 욕구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출판사를 통하여 그 책의 번역자가 확인을 해주었으며, 그 답변내용을 출판사에서 회신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출제자는 자신이 출처용으로 사용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 확인 작업 없이 그대로 출제를 하여 사실상 정답이 두 개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처가 된 번역서에는 귀속적 욕구와 보상의 결정기준이 모두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인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출제자는 그것이 오류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복사하듯 출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출판사의 답변 및 번역자의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수험생들 모두 읽어보시고, 향후 학습에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출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비판은 간과할 수 없으나, 출처가 되는 책을 낸 출판사와 번역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익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출판사 회신내용 -----

Sent: 2019-02-07 (목) 09:12:48  
Subject: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도서출판 ○○○○입니다.

먼저 여러 일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관한 답변을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번역해주신 ○○○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원문 그대로를 첨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 저희 책의 내용에 있어 번역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서야 발견된 번역 오류에 대해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번역 오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한 좋은 지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개정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올 한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학교 ○○○ 교수입니다.

보내주신 질문을 받고 다시 책을 보니 저희가 큰 실수를 했더군요.

보상은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아니라 '형평'에 대한 규범적 기준(normative criteria for equity)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걸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으로 잘못 번역한 채로 그대로 두었네요. 따라서 보상은 (1) 형평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2) 집단지향적 할당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귀속적 욕구는 특정 인구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즉 욕구가 있다고 규범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적 기준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보상이란 형평 차원에서 볼 때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즉 욕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적 기준이나 경제적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실수를 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좋은 지적, 중요한 지적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당의 세부원칙	원칙의 결정기준	
귀속적 욕구	욕구의 규범적 기준	집단지향적 할당
보상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	
진단적 차등	욕구의 기술적 분류 기준	개인적 할당
자산조사	욕구의 경제적 기준	